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56

발의연월일: 2021. 5. 28.

발 의 자:김선교・박대수・김예지

정찬민 · 성일종 · 이종배

김정재 • 구자근 • 김형동

김석기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"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"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.

인·허가 의제는 법령에 따른 둘 이상의 인·허가를 전제로 주된 인·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인·허가를 의제하는 것으로서, 인·허가 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는 관련 인·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·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, 현행법에 따르 면 허가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.

이에 "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"를 허가에 포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제34조, 제37조, 제38조 및 제41조).

법률 제 호

#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허가"를 "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)를 하거나"를 "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거나"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41조제1호 중 "농지전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)를"을 "농지전용허가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34조(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)       | 제34조(농지의 전용허가·협의)   |
|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        | ①                   |
|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식품부장관의 <u>허가</u> 를 받아야  | <u>허가(다른 법률에</u>    |
| 한다.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       |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    |
| 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    | 협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   |
| 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우에도 또한 같다.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.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      | <u> &lt;삭 제&gt;</u> |
|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2. ~ 5. (생 략)           | 2. ~ 5. (현행과 같음)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제37조(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)      | 제37조(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)  |
|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|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장・        | 2                   |
|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<u>제3</u> | <u>ম</u> ]3         |
| 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        | 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  |
| 협의(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        |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  |

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)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제38조(농지보전부담금) ① 다음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·관리 및 조 성을 위한 부담금(이하 "농지 보전부담금"이라 한다)을 농지 관리기금을 운용·관리하는 자 에게 내야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
- 5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
제41조(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) 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다고하수원 외의 지목으로

| 를 하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
|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8조(농지보전부담금) ①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
|  |
|  |
|  |
|  |
| ·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|
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
|  |
|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~ ⑸ (현행과 같음)<br>제41조(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) - |
| (6/11 시도 현경 세 <i>만)</i> =              |
|  |
|  |

변경하지 못한다.

2. ~ 5. (생 략)

1. 제34조제1항에 따라 <u>농지전</u> 용허가(다른 법률에 따라 농 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를 포함한다)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 한 경우

| 1           | <u>농지전</u>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<u>용허가를</u>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_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|

2. ~ 5. (현행과 같음)